

주간건설 *Review*

493호 2017.7.7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
홈페이지 : <http://www.kfcc.or.kr>, 연 락 처 : 02-771-7936
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■ **업계 동향**

- ▶ 한화건설, 2017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
- ▶ 롯데건설, 러브하우스 봉사활동
- ▶ 계룡건설, 소년체전 대전지역 입상자 장학금

■ **건설경제 일반동향**

- ▶ 재정 조기집행 후유증 우려 확산
- ▶ 2016년 건설현장 재해율 10% 증가

■ **건설 제도정책 동향**

- ▶ 국민안전처,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추진
- ▶ 국회, 주택법 개정안 수정 가결
- ▶ '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'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
- ▶ 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' 국무회의 통과
- ▶ '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' 의원입법 발의
- ▶ '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' 의원입법 발의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7.7.1.(토)~2017.7.7(금)>

제493호 2017.7.7(금)

<업계 동향>

◆ 한화건설, 2017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

○ 6월5일 한화건설은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30여개 협력사 대표이사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17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'를 개최하였음



- 건축, 토목, 플랜트, 기계, 전기, 구매 부문에서 지난 2017년 우수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한 한화건설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 한 해 동안 품질향상과 기술혁신 등에 공헌한 우수협력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우수 협력사 5개사와 우수협력사 22개사를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하고, 2년 이내의 신규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뉴파트너상에 3개사를 선정,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회사들도 수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
- 한화건설은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, 입찰기회 확대, 이행보증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협력사와 더불어 신뢰에 기반한 상생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
- 한편, 한화건설은 그룹의 경영철학인 '함께 멀리'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,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음

◆ 롯데건설, 러브하우스 봉사활동

- 6월29일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및 희망학교를 방문해 하석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롯데건설 임직원과 시설개선 봉사단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'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 봉사활동'을 펼쳤음
- 금천구 내 지역아동센터 2곳과 희망학교 1곳에서 펼쳐진 이날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에서는 공부방과 노후시설 보수·교체 작업을 실시한데 이어 각 시설에 필요한 에어컨과 노트북 물품도 전달하였음

- 롯데건설은 지난 2015년 1월, 금천구와 봉사활동 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음
- 한편, 롯데건설은 러브하우스 봉사활동 이외에도 전 임직원이 매달 사회에 환원한 급여만큼 회사가 돈을 기증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한 ‘사랑나눔 기금’을 조성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샬롯데 봉사단의 자율적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해왔음



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 현판식에 참석한 하석주 대표이사(오른쪽에서 세 번째)와 차성수 금천구청장(오른쪽에서 네 번째)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

◆ 계룡건설, 소년체전 대전지역 입상자 장학금

- 6월29일 계룡건설은 본사 강당에서 계룡장학재단 주관으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대전시 대표로 출전해 우수 입상한 육상 2관왕 대전가수원초 김수우 등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였음



소년체전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행사에 참석한 계룡장학재단 관계자들과 수상 선수들

-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, 권도순 대전시체육회 상근부회장, 지도교사, 학생, 학부모 및 계룡장학재단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음
- 체육 격려장학금은 충청남도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메달을 획득한 대전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92년 12월 재단 설립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만 4197명 장학금 54억6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음
- 앞서 계룡장학재단은 지난 6월26일에도 충청남도 우수입상한 56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음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7.7.1.(토)~2017.7.7(금)>

제493호 2017.7.7(금)

<건설경제 일반동향>

◆ 재정 조기집행 후유증 우려 확산

-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재정 조기집행을 완료했지만, 수주절벽이나 공정관리상 과부하 등 건설업계와 현장의 하반기 후유증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

<주요내용>

□ 정부 재정조기 집행 실적과 평가

-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전체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135조3000억원의 집행실적 보이며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이 약 48.0% 수준을 기록해 당초 목표 보다 약 5조5000억원 가량 초과 집행을 달성
- 5월말 기준 SOC예산 역시 계획 대비 4000억원 늘어난 총 20조1000억원의 집행을 완료
- 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각종 입낙찰 및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, 감독의 결과물이라며,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은 내수 및 소비심리 회복 등 최근 국내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견인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

□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 우려

-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은 건설투자 규모의 적정선 유지 효과에도 불구하고, 하반기에 예상되는 후유증 우려 존재
- 우선 6·19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 등 민간건축의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가 경정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빠졌고, 정부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도 SOC가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수주절벽 우려 확산
- 목표 대비 미진한 집행실적을 보였던 일부 발주자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'밀어내기' 발주를 통해 과도한 선금이나 기성을 집행한 경우도 다수 발생
- 이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주물량 확보에 성공한 업체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과도한 선금을 주거나 무리한 공정률 목표를 밀어부치는 발주자로 인해 공정관리에 대한 부담은 물론 선금 및 기성금 반환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,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임

◆ 2016년 건설현장 재해율 10% 증가

- 7월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액 1,000위 이내 건설업체의 2016년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전년대비 1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시행키로 하였던 「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」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,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·감독도 강화하고, ‘건설공사의 설계·시공 등 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발주자의 재해예방활동 및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

<주요내용>

□ 건설현장 재해자 수 10.6% 증가

- 2016년도 1,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,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 (10.6%) 증가하였고,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(20.3%) 증가
- 평균 환산재해율은 0.57%로 전년도 0.51%에 비해 0.06%p 높고,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
⇒ ('12년) 0.43% → ('13년) 0.46% → ('14년) 0.45% → ('15년) 0.51% → ('16년) 0.57%
- 환산재해율은 '16년도에 1,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,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,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

※ 재해율(%):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

□ 대형건설사의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

- 업체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으며,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,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및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결과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

<건설업체 규모별 환산재해율>

▲ 1군 (1 ~ 100위): 0.34%	▲ 2군 (101 ~ 300위): 0.88%
▲ 3군 (301 ~ 600위): 1.40%	▲ 4군 (601 ~ 1,000위): 1.85%

-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 환산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(PQ) 시 신인도 항목 가점(298개사, 0.2 ~ 1점)과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심사·확인 면제(39개사) 등의 혜택을 부여
- 환산재해율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 포함(99개사) 및 시공능력평가지 건설공사실적액 감액(615개사, 공사실적액의 3 ~ 5%) 등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

처분

-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50점 이상인 건설업체(356개사)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(PQ) 시 0.2 ~ 1.0점의 가점 부여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7.7.1.(토)~2017.7.7(금)>

제493호 2017.7.7(금)

<건설산업 제도·정책 동향>

◆ 국민안전처, 소방시설공사법 개정 추진

-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 하자 발견시 소방시설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원도급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소방시설공사법’ 개정안을 마련·추진할 계획

<개정 추진내용>

□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원도급자 공동책임 부과

-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, 감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도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동 책임 부담

□ 원도급자의 시공범위 확대

- 원도급자는 주요 설비 공사를 직접하고 나머지 공정만 하수급인에게 맡겨야 함
- 이는 그동안 원도급자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기초적인 공사만 하고 대부분 공정을 하수급인에게 넘겼던 탓에 공사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

□ 위법 행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

- 위법 행위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‘3000만원 이하’에서 ‘2억원 이하’로 상향 조정함

□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

-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외에 명의를 빌려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

◆ 국회, 주택법 개정안 수정 가결

- 7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에서 ‘주택법 개정안’(3.31,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)이 수정 가결됨
- 개정안은 규제 최소화, 법 체계, 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수정 예정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

-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가격, 주택거래량, 청약경쟁률, 주택보급률, 분양권 전매량,

미분양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

□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조정사항

-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(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)으로 지정한 경우 △입주자격, 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△전매제한기간 △주택도시기금 지원 △금융·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△기타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□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

-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·해제 시, 미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, 지정·해제 내용을 공고·시장(군수·구청장)에게 통보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주택공급 및 거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적용되는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
-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토록 함
-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□ 전매제한기간 및 전매행위제한 예외의 위임

-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령(現行. 대통령령)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, 생업상 사정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(現. 대통령령)으로 정하도록 위임함

□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

- 수도권외 지역의 민간택지공급주택에 대하여 전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지역별로 국토교통부령(現行. 대통령령)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◆ ‘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’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

- 7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에서 ‘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’(3.10.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)이 수정 가결됨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사유(부득이한 사정→정당한 사유) 변경

-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‘정당한 사유’(現行. 부득이한 사유)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

◆ 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’ 국무회의 통과

- 7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(뉴스테이)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할 수 있는 대상시설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’이 통과됨
- 이에 따라, 개정안은 오는 7월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

-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‘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’를 판매·업무시설, 문화·집회시설,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하지 않고, 정온(靜穩)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·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함

□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 마련

-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,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함
- 이는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,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
□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

-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
- 이에 따라,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,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(4년~8년)에 임대료 증액 제한(연 5% 이내)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◆ ‘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’ 의원입법 발의

- 6월29일 국회 김규환 의원(자유한국당)은 부정당업자 제재시, 제재시작 15일 전까지 제재의 근거와 이유 등 일정사항을 부정당업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’을 대표발의함
- 이는 “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

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”이라는 게 김규환 의원실의 설명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부정당업자 제재시 일정 사항의 사전 통지 의무화

-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제재(입찰 참가자격 제한)시, 제재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재의 근거와 이유, 당사자의 성명(명칭)과 주소, 제재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부정당업자에게 통지토록 함

◆ ‘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’ 의원입법 발의

- 6월29일 국회 전현희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해외건설산업 정보체계 구축과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 지원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’을 대표발의함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‘해외공사 지원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’ 규정

- 국토부장관은 해외공사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,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
-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함

□ 해외 인프라·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근거 등 신설

- 해외 인프라·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근거, 지원기구의 소재지·자본금·지원기구의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